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25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 9.(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출의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및 도입 증가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농촌인력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변경 : 2실 17과 1단(한시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나. 한시기구 신설 (안 제18조)

- 농촌인력지원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5266(2025.12.26.)호]
- 라.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마. 입법예고 : 2025. 12. 24. ~ 12. 2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시기구

제18조(한시기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본청에 농촌인력지원단을 둔다.

② 농촌인력지원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 공급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촌인력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한시기구</u></p> <p><u>제18조(한시기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본청에 농촌인력지원단을 둔다.</u></p> <p><u>② 농촌인력지원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촌인력 공급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u> <u>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농촌인력 전반에 관한 사항</u>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도와 시·군·구 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행정팀장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에 따라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행	0.8% 이내	5.0%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3.1% 이상	0.8% 이내
개편	0.8% 이내	5.2%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2.9% 이상	0.8% 이내

나. 정원표 조정

- 직급별·기관별 정원 조정내역(안 제4조 관련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
총 계	699→700	365→366	15	100	..
∴	∴	∴	∴	∴	..
일반직	663→664	358→359	15	71	..
∴	∴	∴	∴	∴	..
5급	33→34	17→18	2	2	..
∴	∴	∴	∴	∴	..

※ 본청 정원은 [별표 4] 한시정원을 포함한다.

- 한시정원 신설(안 제6조 관련 별표4)

직급별 \ 기관별	한시기구	비 고
총 계	1	존속기한 2027.1.31.
일반직 계	1	
5급	1	농촌인력지원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기획예산실-15266(2025.12.26.)호]

라.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5. 12. 24. ~ 12. 2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9명이며”를 “700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4명”을 “68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에”를 각각 “성주군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성주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0.8% 이내	5.2%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2.9% 이상	0.8% 이내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2%이내	88%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이내		

[별표 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00	366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4	359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4	18	2	2	3	9
6급상당 이하 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

본청 정원은 [별표 4] 한시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제6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한시기구	비 고
총 계	1	존속기한 2027.1.31.
일반직 계	1	
5급	1	농촌인력지원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99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84명</u></p> <p>2. (생략)</p> <p>제3조(정원채정 기준) ① <u>군</u>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u>군</u>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u><신 설></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700명</u>이며----- -----.</p> <p>1. ----- <u>685명</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원채정 기준) ① <u>성주군</u>에 ----- -----.</p> <p>② <u>성주군</u>에 ----- -----.</p> <p>제6조(한시정원) <u>성주군</u>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u>별표 4</u>와 같다.</p>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td> <td>9급</td> <td>전문 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0.8% 이내</td> <td>5.0% 이내</td> <td>25.1% 이내</td> <td>29.2% 이내</td> <td>26.0% 이내</td> <td>13.1% 이상</td> <td>0.8% 이내</td> </tr> </table> <p>2. 연구·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연구 직</td> <td colspan="2">지 도 직</td> </tr> <tr> <td>연구관</td> <td>연구사</td> <td>지도관</td> <td>지도사</td> </tr> <tr> <td>비율</td> <td>3%이내</td> <td>97%이상</td> <td>12%이내</td> <td>88%이상</td> </tr>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0.8% 이내	5.0%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3.1% 이상	0.8% 이내	구분	연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2%이내	88%이상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td> <td>9급</td> <td>전문 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0.8% 이내</td> <td>5.2% 이내</td> <td>25.1% 이내</td> <td>29.2% 이내</td> <td>26.0% 이내</td> <td>12.9% 이상</td> <td>0.8% 이내</td> </tr> </table> <p>2. 연구·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2">연구 직</td> <td colspan="2">지 도 직</td> </tr> <tr> <td>연구관</td> <td>연구사</td> <td>지도관</td> <td>지도사</td> </tr> <tr> <td>비율</td> <td>3%이내</td> <td>97%이상</td> <td>12%이내</td> <td>88%이상</td> </tr> </table>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0.8% 이내	5.2%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2.9% 이상	0.8% 이내	구분	연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2%이내	88%이상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0.8% 이내	5.0%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3.1% 이상	0.8% 이내																																																						
구분	연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2%이내	88%이상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0.8% 이내	5.2%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2.9% 이상	0.8% 이내																																																						
구분	연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12%이내	88%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이내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5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3	358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3	17	2	2	3	9
6급상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 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100% 이내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00	366	15	100	45	174
정무직 계		1	1	0	0	0	0
군 수		1	1				
일반직 계		664	359	15	71	45	174
3급		1	1				
4급		1			1		
4~5급		3	2				1
5급		34	18	2	2	3	9
6급상이하소계		621	335	13	67	42	164
전문경력관소계		4	3		1		
별정직 계		1	1	0	0	0	0
7급상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7	5	0	2	0	0
연구관		0					
연구사		7	5		2		
지도직 계		27	0	0	27	0	0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별표 4]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 (제6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한시기구	비 고
총 계		1	존속기한 2027.1.31.
일반직 계		1	
5급		1	농촌인력지원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관련법령 발췌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한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행정팀장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3조 ~ 제8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 (임기) 공무원인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공무원 아닌 위원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안전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가능(제9조)

라. 수당 등(제10조)

-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80(2025.10.15.)호]
- 2) 성별영향평가 분석 : 검토완료([가족지원과-50372(2025.10.15.)호]
- 3) 입법예고(2025.11.17.~2025.12.8.) 결과,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라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7.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 간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라. 작성자

농정과 농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 9.(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및 도입 증가에 따른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촌인력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농촌인력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변경 : 2실 17과 1단(한시기구)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나. 한시기구 신설(안 제18조)

- 농촌인력지원단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과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군 농업 경쟁력과 직결된 것으로, 전담 기구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농촌 인력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에 따라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행	0.8% 이내	5.0%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3.1% 이상	0.8% 이내
개정	0.8% 이내	5.2%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2.9% 이상	0.8% 이내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직급별·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
총 계	699→700	365→366	15	100	..
∴	∴	∴	∴	∴	..
일반직	663→664	358→359	15	71	..
∴	∴	∴	∴	∴	..
5급	33→34	17→18	2	2	..
∴	∴	∴	∴	∴	..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라 농촌인력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8조)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 (임기) 공무원인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안검심의회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기능(안 제9조)

라. 수당 등(안 제10조)

-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지원 가능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 점은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